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228호 2000. 2. 1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 제16,706호)이 개정되어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 등이 시설용지지구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의 확인대상에 하천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등을 포함시켜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본문중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를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도시기본계획구역”을 “도시기본계획구역중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2조의4제2호가목(4)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12)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다만, 시장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비추어 보아 산업촉진지구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이를 산업촉진 지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조의4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설용지지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하되,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거나 관광객 이용시설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구

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구

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구

라. 묘지수급계획에 적합하고, 당해 지역의 임상이나 토질 등으로 보아 집단묘지로 개발함이 적합한 지구. 다만, 댐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조성 등 대단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 등을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묘지수급계획에 불구하고 시설용지지구로 할 수 있다.

제2조의5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6(준농림지역의 입안)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또는 보전임지가 아닌 임야 등으로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지형·지물을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를 “지형·지물에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본문중 “영 제11조제1항 단서”를 “영 제11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3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경되는 용도지역의 위치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도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열람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열람내용	국토이용계획·수도권정비권역·도시계획·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보전임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기타
------	---

개발행위신고서	처리기간
	7일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2조의4·제2조의6 및 제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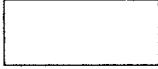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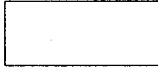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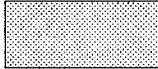
별지 제13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경되는 용도지역의 위치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도면

별지 제14호서식 개발행위신고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국토이용계획도상의 용도지역별 채색기준(제2조의12관련)

용도지역 및 지구	채 색 기 준	
도 시 지 역		빨강색
준 도 시 지 역 · 취 락 지 구 · 산 업 촉 진 지 구 · 시 설 용 지 지 구		보라색
	취 락	· 준도시지역으로 채색후 고무인
	산 업	· 규격 - 가로 2.0cm, 세로 0.8cm
	시 설	- 글씨 : 명조체 - 가로 2.0cm, 세로 0.8cm - 글씨 : 명조체
농 립 지 역		초록색
준 농 립 지 역		노랑색
자연환경보전지역 · 수산자원보전지구		바탕색 : 무색 선 : 초록색
	수산자원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채색후 고무인 · 규격 - 가로 2.0cm, 세로 0.8cm - 글씨 : 명조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굵은 선안에만 기재하기 바랍니다.						1일	
신청인	성명	주소					
대상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시·군·구	읍·면	리·동				
확인내용	1	국토이용	용도지역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			
			용도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 여부				
	2	도시계획	용도지역	(전용·일반·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용도지구	풍치·미관(1, 2, 3, 4, 5종)·아파트 고도(M이상, 이하 또는 층 이상, 이하) 기타()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축·접합)·공원·기타()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일단의(주택지·공업용지)조성·재개발·시가지조성			
			구역	개발제한구역(안·저축)·상세계획구역(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 : 과)·기타()			
			기타	도시계획입안사항,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3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군용항공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해당없음
	4	농지	농업(진흥·보호)구역				해당없음
	5	산림	보전임지(생산·공익)				해당없음
	6	자연공원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해당없음
	7	수도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해당없음
	8	하천	하천구역·하천예정지·연안구역·댐건설예정지역				해당없음
9	문화재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해당없음	
10	전원개발	전원개발사업구역(발전소·변전소)·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당없음	
11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수수료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1천원 (관할 시·군 또는 구가 아닌 경우에는 2천원)	

(뒤쪽)

※ 참고사항

1. 이 확인원은 1필지에 대한 앞쪽의 1 내지 11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사항의 확인입니다.
2. 이 확인원은 부동산에 관한 주요 제한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이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도면은 발급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도시계획확인도면을, 준도시지역에서는 개발계획도면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4. 군사시설란중 군용항공기지구역에 대하여는 확인원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지구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전원개발란중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발전소 및 변전소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확인도면, 개발계획도면>

